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대학 추가 모집 공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대학 신규 선정을 위한 추가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희망하는 대학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I.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모집 공고 주요 내용(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 전체 15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① ▲ 2025년 이전 선정되어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5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2/3 이상인 대학,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2년 이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사업(지원) 기간	▲ 지원 약정 체결일 ~ '26.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만 신청·선정된 대학의 경우(최소 2년)
지원 내용	▲ 사업 운영비: 56백만원~2억원 <신청목표 인원 × 28만원(단가)> ▲ (거점형) 300명~700명 ▲ (거점형 외) 200명~700명 ▲ 컨설턴트 인건비,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운영경비 포함 * 지원 상한액: 2억원
접수기한 접수방법	▲ '25.3.14.(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선정심사(본부) → 우선협상대학 발표(3월 중)
제 출 처	▲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II.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추가 모집 공고 세부 내용

□ **(사업목적)** 미취업 졸업생 발굴체계 구축하고 수요자(청년·지역기업 등)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발굴 졸업생의 사후 관리 강화로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사업방식)** 대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선정규모)** 전체 15개교 내외

* 신규 선정 규모는 잔여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예정) 대학 우대,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본교의 캠퍼스는 별도 신청 불가)는 별도 응모 가능하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제2, 제3 캠퍼스 중심의 사업 운영 가능(예시: 학교본부가 있는 제1캠퍼스에 보건의료계열 등이 집중 소재하여 사업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일반형)를 운영하는 대학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참여 신청 필요(미신청한 경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예산 지원 불가)

□ **(신청제외 대상)** ①공고일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 β 이상인 대학 ②'25년 학자금 지원제한대학 ③'22년 이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④고용부 산하 출연대학(한국폴리텍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보건의료계열: 의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 **(사업기간)** 지원 약정 체결일 ~ 2026.2.28.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인원·지원내용)** 미취업 졸업생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인원을
선택하여 신청

○ 사업 운영비: 56백만원~2억원 <신청목표 인원 × 28만원(단가)>

△ (거점형) 300명~700명 △ (거점형 외) 200명~700명

* 지원 상한액: 2억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선정 취소·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지정 등 지원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등의 재심사를 통해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 선정 이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취소(예시: 연차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중단) 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불가(지원취소)
- 2개 이상 대학의 공동(컨소시엄) 참여·운영 제한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시 대학이 해당 민간기관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방식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간전문기관은 다음의 자격을 갖출 것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민간전문기관 대표자(법인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신청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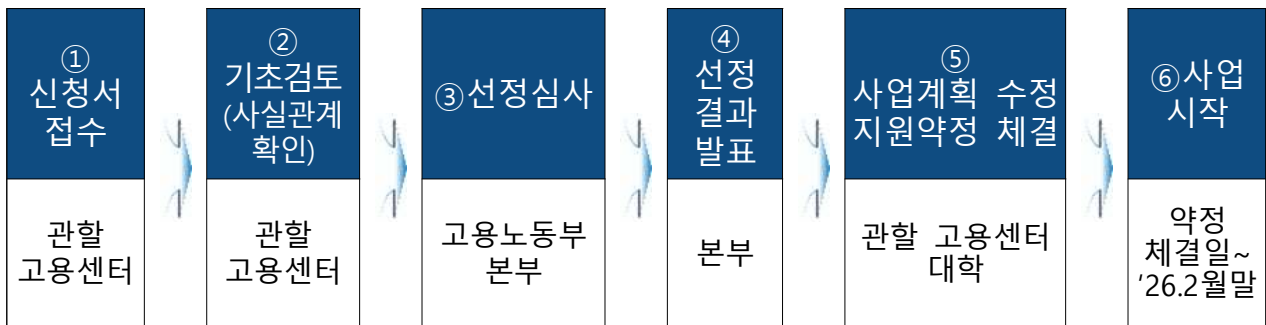
□ **(신청 기한·접수)** '25.3.14.(금) 17:00까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시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심사절차·일정)**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 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되, 우편은 3.1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② 관할 고용센터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검토 시 목표인원 등 적정성 포함
- ③ 선정심사: 사업계획 등 심사
* 사업별 심사 최저기준(가점 제외 100점 중 70점) 통과 시에 한함
- ④ 우선협상 대학교 발표(3월 31일 잠정, 변동 가능)
- ⑤ 우선협상대학과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계획 조정하여 약정 체결
※ 일정 변동 가능

※ 사학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가급적 심사 시 제외

□ **(문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담당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백경남 사무관 ☎ 044-202-7416
명진아 주무관 ☎ 044-202-7567)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진로·취업 지원체계 · 인프라 구축 (25)	인력 (10)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절성 · 전문인력 확보 및 내부 인력(교수-교직원-전문컨설턴트 대상)의 진로·취업지원 역량강화 계획 등이 우수한가?
	시설 (5)	■ 상담 등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필요 공간 확보 방안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직원의 근무장소, 상담공간 등은 적절하게 구비되었는가? · 공간 활용계획은 각종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기존 사업 성과 (10)	■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5) · '22~24년(3개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 결과 반영 * 3회 우수(5점), 2회 우수(3점), 1회 우수(1점) ■ 유사 정부지원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외) 수행 역량(5) · 진로·취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 유사사업 참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거나 수상경력이 있는가?
서비스 제공 계획 (65)	미취업자 발굴체계 (15점)	■ 미취업 졸업생 발굴 체계 · 졸업생(마지막 학기 예정자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및 미취업 졸업생 DB구축 등이 적절하게 구성·관리되고 있는가? · 미취업 졸업생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지원 체계 적절성 · 졸업생 취업을 대비 서비스 제공 목표 인원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 미취업 졸업생의 1:1 상담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 역량·의지, 전공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35점)	■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지원 여부 · 졸업생이 스스로 기획하여 요청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1:1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할 수 있는가? · 졸업생의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역량 진단 등 실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미취업 졸업생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고 있는가?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 재학 중 서비스 참여 경험, 희망 프로그램(상담 포함)·취업역량 인식(취업 준비도 등)을 조사하되, 전공·희망직무를 구분하여 조사 ■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여부 ·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 동문 네트워크가 부족한 대학은 민간취업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기업 평가 정보, 취업컨설팅 등 현직자 멘토링 지원 계획 반영 여부 · 전공·희망직무별 동문 현직자 선배와의 커뮤니티 구축 계획은 및 운영 방안은 적절한가?
	사후관리 강화 (10점)	■ 서비스 참여주의 사후 관리 방안 및 취업 이후 경력초기 적응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전담 컨설턴트 지정여부 및 사후 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 취업 이후 지속적 정보제공 및 경력초기 적응지원 등 계획은 적절한가?
	외부기관과의 협업 (5점)	■ 고용센터, 자치단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업단체 등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지역 내 주요 청년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연계, 지역기업으로의 취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 가능성 여부 * 고용복지+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미래내일 일경험 운영기관, 직업훈련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구직기간 장기화(예: 졸업 2년 이상, 서비스 제공 1년 이상) 시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 방안의 구체적 계획·운영이 적정성 여부
서비스 확산 의지 (10)	홍보 (10)	■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계획 · 보다 많은 지역 청년, 미취업 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효과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붙임2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예산 활용범위

□ 예산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비는 운영비·프로그램비로 구분, 항목별 금액에 맞게 사업계획에 반영·활용

□ 세부 활용 가능 내역(예시) ※ 사업비와 운영경비 비율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사업비 (보조예산의 95% 범위)	○ 전문 컨설턴트 및 행정전담인력 인건비(법정 수당 등 포함)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청년 진로·직업 상담 인력 채용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관련 행정 지원·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 전문 컨설턴트 및 행정 전담·보조인력 등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업무수행 인력*에 한하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 불가 * ①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 ②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업무를 포함하여 청년취업지원 업무(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 ③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과 대학 내 기타 업무(청년취업지원 외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은 포함하지 않음 - 지원대학은 사업주 사회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책정 가능하나 인건비 항목과는 별도 구분하여 예산 책정(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또는 매월 적립 가능) ※ 퇴직금 적립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컨설턴트 계약기간에 대하여 인정하며, 법정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전 퇴사하는 등 적립금 미집행 사유 발생 시 환수(고용센터는 매년 점검 및 정산 시 퇴직 적립금 정상 적립·집행 확인) - 인건비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 가능 ▲ 교수·강사 등 기존 교비로 지급되던 교원의 급여 및 수당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본 사업비로 대체할 수 없으나, 교수·강사·컨설턴트 등 교원이 근무시간 외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관련 특강 등을 진행하는 경우 특강료 지급 가능 ▲ 컨설턴트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취업처 관리, 특강 등 이유로 형식적인 교수 직함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 인정(증빙 제출 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교원의 급여 및 수당을 사업비로 대체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운영비 -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및 졸업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 미취업 졸업생 자체 발굴 소요비용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비 지출 불가 *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 및 멘토 섭외, 장소 대관, 교보재 구입 등 지출 가능(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빌드업 예산 지출 준용)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교재비, 운영실비 등 - 개별 프로그램의 민간전문기관 위탁 비용 집행 가능 * 단, 프로그램 등 사업은 가급적 대학 직접 운영 권장 -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 계획(월 4회 × 9개월) 수립 → 대상자 선발 및 최종 운영성과 분석 시 인센티브(최대 200만원) 지출 비용 가능 ○ 컨설턴트 등 역량강화 교육 -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대학 간 네트워크 활동비 및 교육 참여시 - 사업비 총액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성과 개선 및 실적 향상을 위한 행사에 한함 ○ 사업·프로그램 홍보비 - 사업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성과 개선 및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 한함
운영비 (보조예산의 5% 범위)	○ SMS, MMS 등 멀티미디어 전송 및 관련 부대 비용 - 관련 부대비용: 데이터 사용료, 전송 시스템 및 장비 사용료 구축 등 - 비대면 정보제공 서비스 수신률 향상을 위한 참여유인 제공(기프티콘 등)은 해당 예산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 운영경비, 소모품비 등 -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위원수당 지급, 기타 운영경비 등 ○ 업무추진비 - 회의, 행사 등의 관련 식대 및 다과 비용 등 - 운영경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민간 컨소시엄 기관 운영·관리비 - 소속 컨설턴트의 채용·관리, 센터 운영과 관련한 회의 실비 등

【 서식 1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 신청서 (관련사업 수행실적 포함)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 신청서				
기 관 현 황	대 학 명			
	대학 주소			
	대표자(총장)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졸업생 수	2023	
			2024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E-mail
학 제	☐ 일반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컨소시엄 기관명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여부() ☐ 거점형 ☐ 일반형 ☐ 미참여 ※ '24년이 아닌 '25년 운영대학을 말함(○·× 표기) □안에 V표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청 없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미참여 □안에 V표기 ③ '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참여 예정 대학 () ※ '24년 이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25년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모집 공고에 참여할 예정인 대학을 말함			
신 청 사 항	사업 운영 규모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여부() ☐ 거점형 ☐ 일반형 신청인원: 000명 ※ 졸업생 규모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지원 목표 가능 인원 표기		
_____대학교는 2025년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대학 선정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사업 운영대학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_____대학교 총장 _____ (인)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22				
2023				
2024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 서식 2 】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_____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명	직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초 정보사항 기재하여 별도 제출

2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3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등 첨부

【 서식 3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요약본)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최대 2페이지

항목		내용
진로·취업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	인력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시설	
	기존 사업 성과	
서비스 제공 계획	미취업자 발굴체계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외부기관 과의 협업	
서비스 확산 의지		
기타(가점 등 필요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목차)

- ※ 공고문·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25.3월 부터 '26.2월까지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목차 항목별 세부사항은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목차 항목을 준수하되 추가적인 목차는 작성 가능
- ※ 분량은 가급적 최대 30페이지(요약본 및 별지 포함), 별지작성 및 서식 변경 가능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조직도 등)은 작성하지 않으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로 제출

1 진로·취업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25)

1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10)

- ※ 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 등의 활용 방안,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계획, 직원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직원의 상담·전산활용 역량 강화 방안 등 기재

1-2 운영 시설 및 공간 구축 계획(5)

- ※ 사업 수행을 위한 근무 장소, 상담 시설 등 공간, 보유·활용 장비 등의 사항을 기재

○ 상담 등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필요 공간 확보 방안(5)

1-3 기존 사업 성과(10)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5)

○ 유사 정부 지원사업 수행 역량(5)

- ※ 기존·유사 취업지원 사업 역량을 통해 향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제시

2 서비스 제공 계획(65)

2-1 미취업자 발굴체계(15)

2-2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계획(35)

2-3 사후관리 강화 계획(10)

2-4 외부기관과의 협업 계획(5)

3 서비스 확산 의지(10)

○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계획

4 연간 추진 일정

※ 프로그램의 추진 일정을 가급적 월별 추진계획으로 작성하나, 분기별 작성 가능

1 개요

- (배경)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졸업생 대상 고용서비스 단절 발생 → 졸업생이 스스로 대플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한 적극적 고용서비스 제공 한계

* 2월 졸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기준 취업여부를 조사하여 1년 후(익년도 연말) 발표

- (추진내용) 부처(교육부 등)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고용서비스 제공 사전 동의한 학생에게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 2년까지 지원
 - 사전 동의한 학생에게 재학·휴학·졸업 유예 상태에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선제적 서비스 안내·제공
 - 졸업생은 취업 현황 조회 후 미취업자 발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복지+센터까지 연계

* (예시) 채용트렌드 및 직무면접 대비 프로그램, 기업 HR 담당자와 함께하는 코칭 프로그램 등

- (추진절차) 대학 장학금 신청(장학재단) 시 개인정보·고용서비스 동의 수집
 - 사전동의자 정보 연계를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휴학·졸업 유예 단계에서도 서비스 제공
 - 졸업 이후에도 고용전산망 조회를 통해 취업 여부 현황 확인 후 미취업 졸업생에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서비스 안내·참여 의사 확인 후 취업지원프로그램 적극 연계

2 시범사업 운영

- (개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졸업생 취업현황을 확인 및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시범운영기관)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 8개소 선정

* 건국대, 성신여대, 단국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전주대, 배재대, 동의대

- (서비스 대상) 자교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위주로 발굴·지원

* 대학당 300명 이상 미취업 졸업생 발굴 및 3천명 지원 목표

- (사업기간) '24.8.16. ~ '25.2월말

③ 지원 프로그램

- ①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미취업 졸업생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졸업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졸업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채용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구인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직무역량강화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 ③ (멘토링) 재학·졸업생에게 수요가 높은 동문선배를 통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전공·희망직무별 동문 현직자 선배와의 커뮤니티 구축하여 구직 Q&A, 구인정보 제공,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제공

- ④ (사후 관리) 발굴 졸업생은 취업까지 관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 (예: 졸업 2년이상)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

- 시범대학과 고용센터 간 협조체계 구축하여 연계된 졸업생은 고용센터에서 전담자를 지정하여 취업까지 관리

* '25년도 전산망 구축시 장학재단-대학일자리+센터-고용복지+센터간 연계시스템 구축(미취업 졸업생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 공유)

□ 추진 체계

- (고용부 본부) 시행지침 작성·개정·해석, 사업 공모 및 심사·선정, 성과평가 등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 총괄

- (관할 고용센터) 관내 대학 선정심사(1차) 및 평가 관여, 사업운영 지도·점검, 보조금 및 수당 부정수급 조사·감독 등 권역 내 사업 운영 총괄

* 지원약정서(협약) 체결, 정부지원금 지급, 사업운영 실태 지도·점검, 대학·자치단체·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사업 전산망 관리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상황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확산, 대학별 컨설팅,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지원, 연차성과평가 운영 등
- (대학) 사업지침·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
 - * 서비스 실적 및 예산 전산 입력 및 관리,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등과의 협력

□ 향후 계획('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단계적 추진)

- [1단계]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실시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개선 병행)
- [2단계] 일반형 대학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로 도입 확대
- [3단계] 고용24(온라인고용센터)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서비스 제공

